

수원지방법원 2018. 10. 24 선고 2018가합1178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및 부양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0. 10.

판결 선고 2018. 10. 2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가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나.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다가 2000. 2. 23. 수원지방법원 2000년1174호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한 사람들이다.

나. 피고는 1993. 2. 4. 원고의 형인 소외 C의 소유였던 화성군 D 전 1,144평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. 한편 2018. 1. 22. 화성군 E리의 행정구역명칭은 화성시 F동으로 변경된바,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의 행정구역을 표시할 경우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'F동'이라고만 한다)에 관하여 1993. 2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

소유권이전등기(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. 2. 4. 접수 제3561호)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토지에서 1995. 1. 18. G 전 381㎡가 분할되어 나왔고, 1997. 1. 18. H 전 496㎡가 분할되어 나왔으며, 1997. 12. 12. I 전 1,326㎡가 분할되어 나오고, 나머지 1,579㎡는 지목이 '대'로 변경되었다. 한편 위 I 전 1,326㎡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.

라. 원고와 피고는 D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지어 1997. 12. 2. 위 건물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(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. 12. 2. 접수 제84491호)를 마쳤으며, 1999. 4. 19.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/2 지분에 관하여 1999. 4. 9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. 4. 19. 접수 제24002호)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① 원고의 형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의 1/2 지분은 피고가 원고와 이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것인바,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을

철회 내지 취소한다. ② 설령 이 사건 토지 및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이 피고가 원고와 이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, 피고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원고와 이혼하기 위해 원고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1/2 지분을 증여받기로 한 약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원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약정이므로, 공서양속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위 증여계약이 없었더라면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/2지분 및 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- 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1/2 지분은 원고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.
- ②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원고의 간통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, 이혼 후에도 원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.

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우선 원고의 주장 1에 관하여 살피건대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와 이혼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1/2 지분을 증여하였는데,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피고의 반신의행위로 인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1/2 지분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회할 수 있다. 그러나 갑 제8,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1/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C의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해제조건인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2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

조울증을 앓고 있는 원고와 이혼하기 위하여 원고를 간통으로 고소하였다거나, 원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갑 제10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는 2000. 8. 30.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0. 9. 7. 위 판결이 확정된 점, ② 진단 일자가 1991. 11. 22.인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는 '꾸준한 약물치료로 안정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치료받아오면서 생각, 감정, 지각, 행동 판단의 정신 기능은 현실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, 향후 정상적인 정신활동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.'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, 원고가 약물치료에 따라 정상적인 정신활동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따름이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대성, 판사 김종찬, 판사 최승호

별지1

목 록

1. 화성시 I 대 228㎡
2. 화성시 J 전 983㎡
3. 화성시 K 도로 115㎡, 끝.

별지2

목 록

화성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

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

1층 119.02㎡

185.36㎡

2층 288㎡

3층 288㎡

4층 288㎡

5층 288㎡

지층 217.64㎡. 끝.